

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 
경제관계장관회의 겸  
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 
25-10-2  
(서면, 공개)

 역동경제로  
서민·중산층 시대 구현!

---

# 현장애로 해소 및 新산업·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

---

2025. 3. 19.

관 계 부 처 합 동

# 순 서

I . 추진배경 및 방향 .....	1
II . 주요 제도개선 과제 .....	2
1.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.....	2
2. 新산업 · 기술 촉진 .....	4
III . 향후 계획 .....	7
[참고]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.....	8

## I. 추진배경 및 방향

### □ (배경) 현장 중심의 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지속 발굴

- 경제관계장관회의,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12차례 규제 대책('22.7~) + 3차례 투자 대책('23.11, '24.3, '24.12)을 발표·추진
- 경제단체실무협의체\*를 중심으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대책 등 지속 마련 중

\* (구성) 경제6단체, 10대 핵심산업, (개최) '24.5월, 9월, 12월

### □ (방향) ①소상공인·중소기업 애로해소, ②新산업·기술 촉진을 위한 11개 과제 맞춤형 규제개선 추진

- 최근 신설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\*과 연구용역\*\* 등을 바탕으로 新산업과 소상공인·중소기업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 추진

\* 중소기업-정부 합동 건의수렴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마련  
→ 중기중앙회-기재부 협업하여 운영('24.12~)

\*\* ①국민기업 체감형 규제개선(규제학회, '24.8~12), ②AI, 바이오 분야 규제개선 (과학기술정책연구원, '24.8~12)

- ▶ (소상공인·중소기업: 5개) 행정부담 경감 및 혼란 해소, 행정서비스 활용도 제고와 관련한 현장 불편 해소 과제
  - ▶ (신산업: 6개)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바이오, 데이터, 수소 분야 중심 맞춤형 규제 개선
- ※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촉진을 위해 단계적 규제 개선 추진

## II. 주요 제도개선 과제

### 1 소상공인·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

#### ① 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행안부

- **(현황)** 지자체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으로 통합 폐업신고를 허용하는 '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\*' 대상 업종이 한정적

\* 간소화 서비스 업종 수(개): ('13)27 → ('15)34 → ('17)49 → ('19)53 → ('23)56  
- (예) 출판·인쇄업, 통신판매업, 자동차관리사업, 담배소매업, 동물병원, 숙박업, 세탁업 등

##### 현장의 목소리

- **폐업 소상공인:** 한 곳에서만 폐업 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관할 구청에만 폐업 신고를 했는데, 폐업 처리가 안 되어 업종 유지시 필요한 교육을 듣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.

- **(추진방안)**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대폭 확대('25.上~)

※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개정(행안부 예규)

#### ② 다수 공급자 계약(MAS)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 개선 조달청

##### ※ 증기익스프레스 핫라인 접수과제

\* MAS(Multiple Award Schedule): 조달청이 공공기관 수요에 맞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품질·성능이 유사한 다수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

- **(현황)** 다수 공급자 계약(MAS) 기간은 2~3년이나 공급자 적격성 평가를 위한 제품 시험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 원본만 유효

- 또한, QR코드 인증 등 여타 방식으로 시험성적서 진본 확인이 가능함에도 원본 제출로 한정하여 발급비용 등 부담 발생

##### 현장의 목소리

- **K기업:**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시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정기간과 계약기간이 상이하고, 시험성적서 발급방법도 QR 코드 등 활용이 가능함에도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담이 큼.

- **(추진방안)**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확대(최근 1년 내 → 2~3년)하고, 사본 제출도 허용

※ 다수공급자 계약 지침 개정('25.6월)

### ③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업종 규정 개선 산업부

- **(현황)**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<sup>1)</sup>에 입주시 조세·임대료 등 특혜<sup>2)</sup> 부여

1) 산단형(마산, 군산 등), 항만형(부산항, 인천항 등), 공항형(인천국제공항 등)

2) 지방세(취·등록세) 100% 감면(조례), 부가세 영세율 적용, 임대료 10년 감면

-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 모호\*하여,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워 기업의 투자 입지 결정에 애로

\* ①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,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업종이면서,

② '관리권자'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(자유무역지역 운영 지침)

↳ 산업단지형(산업부), 항만형(해수부), 공항형(국토부) 3개 유형별 관리권자가 상이

#### 현장의 목소리

- **입주 희망기업:** 자유무역지역 중 어디에 입주할지 고민 중인데 지역별·관리기관별 입주 가능 여부 해석이 달라 투자 입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큼.

- **(추진방안)**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구체화 및 명확화

※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(~'25.下)

### ④ 소규모 공장 설립시 부담금 면제 관련 행정서비스 개선 산업부

- **(현황)**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, 공장설립 승인신청서\*에 이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음

\* 건축면적 500m<sup>2</sup> 이상인 공장 설립시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의 공장설립 승인이 필요하나, 500m<sup>2</sup> 미만인 공장은 대부분 공장설립 승인 없이 **공장등록** 가능

- 그러나, 공장설립 승인 없이 등록하는 소규모(500m<sup>2</sup> 미만) 공장 창업자는 해당 내용을 안내받지 못해 혜택을 인지하기 어려움

#### 현장의 목소리

- **소규모 공장주(창업기업):** 저희는 공장 등록할 때 창업자 부담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서 면제신청을 못했는데, 옆에 큰 공장은 신청하여 면제받았다고 하네요.

- **(추진방안)** 「공장설립승인신청서」와 동일하게 소규모 공장(500m<sup>2</sup> 미만) 창업기업 대상 「공장등록신청서」에 부담금 면제 내용을 명시

※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9호 개정('25.7월)

## 5 분양사업장 설치 규정 개선 국토부

○ **(현황)**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후 분양사업장(비주택 모델하우스)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\*

\*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6조(국토부 고시) : ① 분양사업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이 교부된 후에 설치할 수 있다

\* (現 사업절차)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→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→ **분양사업장 설치**

▪ 국토부는 분양신고확인증 교부(분양신고 수리) 전에도 분양사업장(가설건축물) 축조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中

▪ 국토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, 일부 지자체는 '설치'의 의미를 '가설 건축물 공사 착공'으로 보아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 착공 불허

### 현장의 목소리

■ **분양사업자:** 국토부는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에도 가설건축물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공사 착공을 허용하지 않아 분양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습니다.

○ **(추진방안)**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에도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(분양사업장 설치기준 개정, '25.9월)

## 2 新산업 · 기술 촉진

### 1 (바이오)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등 복지부

○ **(현황)**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, R&D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혜택\* 제공 중

\* ①신약개발 관련 정부 R&D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, ②연구개발인력 비용 법인 세액 공제, ③연구시설 건축시 입지규제 완화, ④정책자금 융자 특례 등

▪ 현행 인증기준이 ①정성평가로 이루어져 객관성 부족, ②글로벌 제약사 별도 인증기준 부재 등으로 문제 개선 요구

### 현장의 목소리

■ **인증심사 참여 기업:** 심사평가시 R&D 투자규모, 글로벌 협력 R&D 확대 등 혁신노력을 더 많이 반영하고, 정량지표 도입과 탈락사유 공개 등을 통해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**(추진방안)** 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한 **정량지표\*** 신설 및 글로벌 협력 R&D를 반영하는 **글로벌 제약사 인증유형 구분** 등 제도개선

\*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, 수출규모 등을 정량지표로 도입

※ 「제약산업육성법」 시행령 및 「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」 개정

## 2 **(바이오) 바이오분야 국가R&D사업 참여조건 완화** 복지부, 중기부

- **(현황)** 국가 R&D사업 참여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결산자료 기준으로 **자격제한\*** 기준 적용중

\*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R&D사업 참여 제외

### 현장의 목소리

- **H기업** : 과기정통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규제를 개선하여 바이오분야 R&D사업에 대해 완화된 자격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다른 부처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.

- **(추진방안)**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신청시점에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**바이오 분야 국가R&D사업 신청 허용\***

\* 과기정통부·산업부는 자격제한 조건을 既 완화('24.下) → 전부처 확대

※ 부처별 바이오분야 연구개발과제 공모시 적용

## 3 **(데이터) 위치정보·사업유형 구분규정 폐지** 방통위

- **(현황)** 現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 유형을 **4개\***로 구분하고 있으나 구분기준이 모호하여 현장혼란 발생·행정부담 가중\*\*

\* 개인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,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

\*\* 예) 위치정보 수집 위치기반서비스 동시 제공사(예: 공유차량)는 이중으로 사업자 등록 필요

### 현장의 목소리

- **위치정보사업자(S社)** : 위치정보 및 사업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의무를 다르게 부과하는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하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.

- **(추진방안)** 사업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위치정보·사업 유형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·단일화

※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

#### 4 [모빌리티]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 확대 서울시

- **(현황)** 강남 일부 지역(강남시범운행지구 약 16.5km<sup>2</sup>), 평일 심야 시간(23시~익일 05시) 내 자율주행택시 시범 운행 중('24.9월~)

##### 현장의 목소리

- **자율주행택시 사업자:** 한정된 자율주행 구간 및 시간 내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가능하여,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어려움이 큼.

- **(추진방안)** 폭넓은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한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(주간 신규 운행, 심야 운행시간 확대 등) 및 운행대수(現 3대) 확대

※ '25.下 자율주행택시 운행사업자 신규 선정시 운행시간 확대하여 허가('25.7월)

#### 5 [수소 등]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평가시스템 개선

산업부, 국토부

- **(현황)**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도입\*·확산 중

\* 순 에너지 소비를 제로(0)로 만드는 녹색건축물 → '25년부터 1,000m<sup>2</sup> 이상 일부용도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등급 상향(5→4등급)

- 수소연료전지 중 발전전용 시스템\*의 평가방법(사용시간, 적정 용량 등)이 부재하여 제로에너지 인증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

\* 열생산을 주로하는 열병합발전 시스템은 제로에너지인증에서 평가 중

##### 현장의 목소리

- **민간 건축주:** 일조량이 한정적인 도심에서는 수소연료전지가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원인데,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에는 열병합발전 시스템만 반영되어 설치를 망설이게 됩니다.

- **(추진방안)**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등급평가 시 발전전용 수소연료전지의 평가 기준 마련 및 에너지평가 프로그램 반영 추진

## 6 (R&D)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

### 활성화 국세청

- **(현황)**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성 여부 사전심사제도\*가 있으나 방대한 매뉴얼, 증빙 부담 등으로 기업 활용에 한계

\*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로 추후 세무조사로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

#### 현장의 목소리

- **K기업:** R&D 세액공제를 받았으나, 몇 년 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거 공제금액이 전액 환수되고, 가산세까지 물었습니다.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제인정 요건을 명확히 알려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큼니다.

- **(추진방안)** 과기부·국세청·관련협회 공동 설명회 반기별 개최, 자가진단 안내 동영상 제작 등록 등 홍보 강화

## III. 향후 계획

- 1 **(현장소통)**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\* 신설(24.12)을 계기로 기업 현장과 소통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과제 검토·협의 추진  
→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과제 지속 발굴·개선
- 2 **(과제관리)** 그간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의 주기적 점검(경제장관회의 등)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 제고

## 참 고

##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

### 1 소상공인·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① 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		
•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(행안부 예규) 개정	행안부	'25.7월
② 다수 공급자 계약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 개선		
• 다수공급자 계약 지침 개정	조달청	'25.6월
③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업종 규정 개선		
•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	산업부	'25.下
④ 소규모 공장 설립시 부담금 면제 관련 행정서비스 개선		
•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개정	산업부	'25.7월
⑤ 분양사업장 설치 규정 개선		
•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개정	국토부	'25.9월

### 2 新산업·기술 촉진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등		
• 「제약산업육성법」 시행령 및 「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」 개정	복지부	'25.9월
② 바이오분야 국가R&D사업 참여조건 완화		
• 부처별 바이오분야 연구개발과제 공모시 적용	복지부 중기부	'25.上
③ 위치정보·사업유형 구분규정 폐지		
•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	방통위	'25.下
④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 확대		
• '25.下 자율주행택시 운영사업자 신규 선정	서울시	'25.7월
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평가시스템 개선		
• 「발전 수소연료전지 평가방법 마련」을 위한 R&D	산업부 국토부	'25.4월~
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프로그램(ECO2) 개선		'29년
⑥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		
• 사전심사제도 안내 매뉴얼 동영상 제작·배포	국세청	'25.5월
• 국세청-과기정통부-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동 설명회		'25.5월11월

# 별첨

## 과제별 부처 담당자

과제명	부처명	담당과장	담당자
<b>소상공인·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</b>			
1-1	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	행안부 민원제도과	김교열 과장 044-205-2441 윤희문 주무관 yhm3798@korea.kr
1-2	다수공급자 계약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 개선	조달청 구매총괄과	박진원 과장 070-4056-7183 김용대 사무관 zerg7578@korea.kr
1-3	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업종 규정 개선	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	오재열 팀장 044-203-4630 정해윤 주무관 yunni@korea.kr
1-4	소규모 공장 설립시 부담금 면제 관련 행정서비스 개선	산업부 입지총괄과	이재석 과장 044-203-4430 고헌 주무관 ghlovely01@korea.kr
1-5	분양사업장 설치 규정 개선	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	김동준 과장 044-201-3434 염연옥 사무관 ajajulie@korea.kr
<b>新산업·기술 촉진</b>			
2-1	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등	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	오창현 과장 044-202-2960 위윤희 사무관 dnldbsghk@korea.kr
2-2	바이오분야 국가R&D사업 참여조건 완화	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	홍승령 과장 044-202-2870 박성민 서기관 smp0907@kroea.kr
		중기부 기술개발과	송제훈 과장 044-204-7760 안준영 사무관 ajj0216@kroea.kr
2-3	위치정보사업유형 구분규정 폐지	방통위 위치정보정책팀	김해나 팀장 02-2110-1290 권경하 사무관 gh001@korea.kr
2-4	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 확대	서울시 자율주행팀	최종선 팀장 02-2133-4961 서정호 주무관 jeongho321@seoul.go.kr
2-5	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평가시스템 개선	산업부 에너지효율과	김현철 과장 044-203-5140 신국재 사무관 skj1004@korea.kr
		국토부 녹색건축과	황도연 과장(직무대리) 044-201-4094 오유탉 사무관 ohyuntack94@korea.kr
2-6	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	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	황남욱 과장 044-204-3910 김영동 사무관 044-204-3922